

문서세단기 렌탈서비스 계약서

문의전화 ☎1599-9427, FAX. 031-429-9482

www.eryun.co.kr

영업점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1. 고객사항(사업자등록증 첨부)

계약자(갑)	성명(상호)		법인(주민)번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설치주소					
	담당자명		직위		E-mail 주소	
	유선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동전화번호	

2. 렌탈요금 납부방법

입금계좌	예금주성명		렌탈료 납부일자	매월 ()일	
	은행명		납부청구방법	은행자동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발송
	계좌번호		입금자(가입자)성명		

계좌입금	계좌번호	100-032-294414	입금은행	신한은행	㈜이룬
------	------	----------------	------	------	-----

3. 계약품목 및 렌탈요금

모델	계약수량	계약기간	보증금	월 렌탈요금	비고
	대	개월	원	원	
	대	개월	원	원	
	대	개월	원	원	
특기사항	합계 (부가세포함)		원	원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정보(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를 CMS 출금이체신청 때부터 해지신청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본인("갑")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갑")은 "을"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제휴금융기관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또는 보험제 이용시 보험사가 구상, 추심위임등의 목적으로 동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또한 "을"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사은행사, 이벤트 등)를 받기위해 SMS 및 E-mail을수신하는데 동의합니다.

상기 계약자 본인은 신청서에 기재된 앞,뒤면 또는 앞 뒤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룬 세단기 렌탈서비스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와 같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갑" 상호 :
성명 :

"을" 주식회사 (주) 이 룬
대표이사 유 낙 준

()
TEL : FAX :

(15847) 경기도 군포시 당정로 60번안길3 1층
TEL : 1599-9427 FAX : 031-429-9482

(신청서 작성시 첨부서류)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개인사업자 : 대표자(본인)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 / 개인 : 계약자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문서세단기 렌탈서비스 이용약관 요약

고객(이하 "갑"이라 한다)은 ㈜이륜(이하 "을"이라 한다)과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는 ㈜이륜의 문서세단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렌탈서비스의 정의 : (1) 렌탈서비스란 "을"소유의 기계를 "갑"에게 렌탈함(임대)에 있어서 계약기간 중 대상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유지보수 서비스와 소모품 및 부품을 "갑"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갑"은 "을"이 실행하는 렌탈서비스에 대해 제3조에 규정한 소정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3) 렌탈서비스를 위한 일체의 서비스제공 시간은 "을"의 소정 영업시간 내에 하기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영업시간 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을"은 소정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 서비스의 제공내용 : (1) "을"이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소모품 및 소모성 부품의 교환 : 정기 점검시 무상교환, 단 "갑"의 사유로 인한 고장 시는 "갑"의 비용으로 처리 2. 기술용역 : 최초 지정장소에 설치 시 사용방법 교육, 정기 점검시 이상유무를 확인

제3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로 한다. (2)"갑"과 "을" 어느쪽에서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약 통보가 없을 시는 본 계약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렌탈서비스 요금의 계산 및 지불 : (1) "갑"과 "을"은 매월 해당기계의 렌탈서비스 요금은 세단기 렌탈서비스 신청서 (3.서비스 사항/렌탈요금 약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계약해지의 월은 사용기간이 1개월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렌탈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갑"은 렌탈서비스 요금을 매월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연체시 "을"은 "갑"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보증금 : (1) 보증금은 렌탈제품의 인도 시 "갑"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그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한다. (2) "을"은 계약의 종료시까지 해당 보증금을 보관하며, 계약종료시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갑"의 관리 부주의 및 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렌탈제품의 파손, 훼손의 경우에는 그러치 아니한다.

제6조 소유권 및 관리의무 : (1) "을"이 "갑"에게 제공한 제 3항의 렌탈서비스 대상기계 및 관련 소모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기계 및 소모품에 대해 선의의 관리보존을 하여야 한다. (3) "갑"은 기계 및 소모품이 "을"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 등을 훼손함은 물론 기계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와 기계 및 소모품을 타에게 매각, 양도, 대여, 유증, 질권의 설정 또는 공장지당법에 의한 지당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을"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갑"은 "을"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공조, 공과라 체납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 "을"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갑"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등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계 및 소모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즉시 그 손해액 전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철회권 : (1) "갑"은 계약서 교부일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설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그효력이 발생한다. (2) "을"이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갑"은 이미 설치한 기계를 반환함과 동시에 "을"은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며 "을"은 기계반환에 필요한 비용,위약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지정사용 : (1) "갑"은 "을"이 지정한 소모품을 렌탈서비스 대상기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이 지정한 소모품 이외의 것을 사용함으로써 기계 및 소모품이 손상 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청구가 있을 시 "갑"은 즉시, 그 손해상당 전액을 배상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 (1) "갑"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기간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아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을"은 그 이행을 최고하는 15일간의 서면 최고 절차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을"의 기계철수에 협조하고 계약 해지시의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렌탈 서비스 요금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 2. "갑"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기계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3. "갑"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갑"이 본 계약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사유 발생시 5. "갑"에게 제6조 소유권 및 관리의무에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였을때 6. "갑"이 폐업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갑"은 "을"에 대해 대상기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석 및 관할법원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민법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기타 : (1)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이행기로 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을 작성 "갑"과 "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CMS 출금 이체특약

"갑"은 "을"에게 아래의 내용에 동의하는 CMS 출금이체 약관 계약을 체결한다.

- "갑"(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갑"이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을"이 지정한 수납기관이 정한 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한다.
- "갑"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계좌오류 및 잔고부족으로 미인출시 "을"은 2~5일 단위로 추가 출금할 수 있다.
- 출금이체를 위해 지정 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 잔액 (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에 수납기관이 의뢰한 대로 출금하지 않거나 전액전부를 출금기로 하며,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 출금이체 신청규정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한다.
- 출금이체 신청 (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5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한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 (지정 출금일에 입금된 타 증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 처리된다.
- 출금이체 업무를 위하여 출금납부와 관련된 지정 계좌 정보 (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 등)가 수납기관에 제공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갑"과 "을"은 문서세단기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